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30

발의연월일: 2022. 10. 17.

발 의 자 : 변재일 · 강훈식 · 문진석

민형배 • 안규백 • 윤후덕

이수진 • 조승래 • 한준호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먹통 사태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인 카카오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6조 및 제76조).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하다)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해당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데이터센터를 운영ㆍ

관리하는 자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해당 여부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 ⑥ 집적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여부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 지 아니한 자
- 4의4.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
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
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
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개 정 안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 업자등"이라 한다)-----

-----.

-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 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 다)
-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 설을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 다만, 집 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해당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

<신 설>

② (생략)<신 설>

<신 설>

<신 설>

다.

- 3.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
- ② (현행과 같음)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 설 사업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해당 여부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신 설>

<신 설>

<신 설>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⑥ 집적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에 물 리적 ·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된 정보 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 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 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신 설>

5. ~ 25. (생략)

④ (생 략)

같음)
③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
이 따르지 아니한 자
4의4.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